

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상돈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관급공사를 할 경우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현황을 관련 조례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별도의 실적평가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수정
 - 「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」
- 실적평가 조항 삭제 (안 제11조)
- 용어의 명확화
 - 도→충청북도, 도의회사무처→충청북도의회, 도지사→충청북도지사
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

- 규정함으로써→규정하여, 상호→서로, 신청 시→신청할 때,
- 사전에→미리, 임하여야→따라야, 계약체결 시→계약체결을 할 경우 등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비롯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관급공사를 할 경우 임금 및 임대료 지급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 별도의 실적평가는 불필요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“상호”를 “서로”로, “신청 시”를 “신청할 때”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